

# 환경정책의 현재와 미래

이글은 지난 7월 2~3일 양일간 개최된『한국의 사회복지-현재와 미래』에 관한 심포지움 내용중 제8분과「복지와 환경」 가운데 발표된 내용이다. 이번 심포지움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이 창립10주년기념 일환으로 서울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두호／環境廳 次長

## (2) 환경영향평가제도

이 제도는 도시개발, 산업입지, 공단조성 등 종 개발사업에 앞서 이를 개발사업이 환경에 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평가 규명하여 그 대방안을 미리 강구하는 제도로서 1981년부터 시하여 1986년말 현재 총 192건의 대규모 공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하였다. 금년 4월 1일부터는 작년말의 환경보전법 개에 따라 민간부문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 (3) 배출부과금제도

이 제도는 오염행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과는 제도로서 서구 선진제국에서는 환경기준을 과하는 모든 오염행위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emission standards)을 초과하면서 계속 업을 하고자 할 경우 개선명령과 병행하여 개완료시까지 오염물질의 종류와 그 농도 및 배량에 따라 부과금을 산정 부과하고 있다. 이도는 1983년 9월부터 도입 시행하여 작년 말까지 3년 동안 총 4,400건에 54억원을 과·징수하였다.

## (4) 대기오염관리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SO<sub>2</sub>, NO<sub>x</sub>, CO, TSP, Ox 등 6개 오염물질을 주된 관리대상으로 삼고 현재 전국 10대 도시에 32개소의 자동측정망과 市級以上 全都市에 288개소의 반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또 전국 20개 도시에 산성우측정기 44대를 설치하여 이를 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 대기관리행정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으며 이를 오염물질을 低減하기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저유황유 공급확대, 자동차배기ガ스의 규제 및 분진저감대책을 들 수 있다.

저유황유공급은 1981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종전의 유황함량 4%의 B/C油를 1.6%로, 유황함량 1.6%의 輕油를 1%로 낮추어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로는 수도권전역과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대도시에까지 확대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는 SO<sub>2</sub>에 의한 대기오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累年の 해묵은 숙제였던 정유공장의 텔황시설을 차수하게 되었다.

다음 자동차배기ガ스를 줄이기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저공해자동차의 생산·공급과 무

연휘발유의 공급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신규제작자동차의 경우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구형모델의 자동차는 1988년 1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휘발유사용차량에 대해 三元觸媒裝置(catalytic converter)를 부착토록 하고 이들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유연휘발유와 동일가격으로 무연휘발유를 공급하게 된다.

#### (5) 수질오염관리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17개 江을 115개 구간으로 나누어 水系別·流域別 利水 목적에 따라 목표수질기준을 5등급으로 나누어 수계관리, 유역관리, 시설관리(공장폐수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전국 406개 지점을 수질검사대상지점으로 설정하여 상시 pH, DO, BOD, COD, SS 등 10여개 항목에 대해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여 수질관리행정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 연안해역에 대하여는 울산, 진해, 부산, 광양 등 赤潮가 빈발하는 오염우심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선박 등 오염원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해역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천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주요대책으로는 전국하천정화대책과 팔당상수원보호대책 등이 있는데 전자는 그간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오염이 심화된 도심 및 공단 관통지천과 그 주변하천을 시·도지사 책임하에 정화 복원토록 하는 대책으로서 매 대상하천마다 관민합동으로 추진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河床浚渫, 폭기조의 설치 등 경비가 과다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비의 일부를 중앙에서 지원해 주게 된다. 후자는 1,200만명의 수도권 인구의 상수원인 팔당댐의 수질을 일등급 수질로 복원·보전하려는 대책으로서 그 상류유역을 직접 영향권, 간접영향권으로 나누고 그 圈域別 목표수질기준을 정하여 공장입지, 위락시설의 설치 등 오염원의 입지와 가축의 사육 등 오염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관계부처 및 관련 시·도와 협의하에 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 외에도 각종 시설관리대책으로 6차 5개년 기간내에 하수처리율을 현재의 9%에서 35%

로 제고해 나가는 동시에 분뇨종말처리율도 현재의 88%에서 92%로 제고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과 도시분뇨처리장 및 읍면오수처리시설을 년차적으로 증설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공단폐수처리의 경제성과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종합폐수처리장도 년차적으로 증설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전국의 상수보호구역을 재편·확대하여 양질의 상수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모든 폐수배출업체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시설설치능력 등에 따라 靑·綠·黃·赤·黑色 등 5等級으로 구분, 관리해 나가고 있다.

#### (6) 폐기물관리제도

현행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제도는 전국 邑級 이상 도시의 생활쓰레기는 해당 시장·군수가 책임·관리토록 되어 있고, 산업폐기물은 그 발생원인 사업자가 책임·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처리시설인 소각장과 매립지가 절대 부족하고 폐기물의 양과 질은 날로 증대되고 악성화되고 있으며 재생·재활용률은 지극히 낮아(1.8%) 대도시의 환경행정당국과 산업체에서는 폐기물처리 문제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폐기물처리대책으로서는 전국 50개 시에 대한 분리수거제의 실시와 서울, 의정부, 성남, 대구 등 몇몇 도시에서 限地的으로 생활쓰레기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정도이며, 거의 대부분이 매립되고 있으나 그 매립방법도 단순투기수준의 매립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자원화 촉진, 위생매립방법의 도입이 시급하다 하겠다.

#### (7) 토양오염 및 화학물질관리제도

이 분야에 대한 현행제도로는 잔류농약으로 인한 인체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농약의 제조·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전국 250개 지역 1,250개지점을 토양오염측정지점으로 설정하고 매년 Cd, Hg, Cu, Zn 등 8개 항목의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또한 작년말 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신규합성유해물질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하거나 제조하기에 앞서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법적장치도 마련했으며, 독물 및 극물에 관하여는

제조업의 허가제와 수입 및 판매업에 대한 신고 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분야 역시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하겠다.

#### (8) 소음·진동·악취 규제제도

현행 우리나라의 소음규제제도는 1983년부터 시행된 지역별·시간대별 생활소음의 허용기준과 1985년부터 착수한 6개 대도시내의 학교 병원 등 靜穩을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에 한하여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며, 진동과 악취에 대하여는 그 기준마저 제정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오염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적 지도에 그칠뿐 엄격한 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 III. 향후의 시책방향

####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확충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환경보전행정은 오염물질이 발생된 연후 그 사후관리에 더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한 온스의 예방은 한 파운드의 치료보다 낫다는 교훈이 있듯이 예방적인 환경관리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개발 및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사전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제도하에서는 일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공사업에 한하여 구속력도 없는 미온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엄격하고 구속력 있는 명실상부한 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

첫째로는 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도 대폭 줄여 예컨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빌딩에 이르기까지 건축허가 이전에 인근의 기존건물에 대한 일조권 및 주변의 숲·공간 확보 등 백년대계를 위한 충분한 영향평가가 선행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다각적으로 그 참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과정은 개발주의자와 보전주의자간의 相衝되는 갈등의 조화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특히 오늘날 다원적인 가치와 이해가 相衝되는 정치

적, 사회적 현실에서의 영향평가의 과제는 이들 갈등을 통합하여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지역사회의 중요 환경정책의 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공동체의 공동관심사에 주민이 스스로 그 의사결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민자치의 이념에도 부합되는 것이며, 또한 개발주의와 보전주의의 가치가 충돌할 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그 합의점이 모색되어 지역의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향평가서의 대주민공개, 평가범위에 대한 사전검토절차의 채택, 공청회 개최 등 평가서 작성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영향평가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절차를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 (2)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선

현행의 배출부과금제도는 경제적 부담에 의한 자율규제를 유도한다기 보다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의제적 성격의 일종의 별과금으로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고려하지 않고 오염우심지역이나 靜淨地域에 관계 없이 획일적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으로 배출시설 밀집지역의 경우 환경기준 달성이 어려우며 또한 규제당국에 의해 적발되기 전까지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부과금의 부과가 불가능할뿐 아니라, 개선기간이 단기간 일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부과금만을 물고 조업을 계속하는 등 오염방지시설의 가동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향권역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차등설정하고 동일영향권역내에서도 배출업소의 업종, 규모 등에 따라 허용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부과금 외에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부과율도 높이는 등 부과금산정방법도 개선해야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과금 부과대상도 배출허용기준초과분에 한할 것이 아니라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오염행위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 (3) 清淨技術(clean technology)의 개발

앞으로 추진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오염예

방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료의 생산, 운반, 투입에서부터 제품의 생산, 폐기물의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低 또는 無公害技術 (low or non-pollution technology)’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는 곧 원자료의 생산에서부터 완제품의 소비 연후 폐기물의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통하여 생산원료의 절약과 폐기물 및 오염물질의 최소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는 자원을 절약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보존해 주는 지름길이 된다.

이제까지는 제품의 생산기술이 따로 있고 배출된 오염물질의 처리기술이 따로 있는 양 인식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전생산공정이 곧 오염의 예방·방지과정이라는 차원에서 생산기술을 청정기술(clean technology)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생산공정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정부는 이의 촉진을 위해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 (4)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우리 지구촌은 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날로 환경은 오염되고 자원은 고갈되어 위기를 당면하게 되었으며 대량생산·대량소비에 따른 폐기물은 날로 그 양이 증대되고 질은 다양화되어 그 처리문제가 중요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양을 감소하여 그 처리비용을 줄이는 첨경은 이를 폐기물을 최대한으로 재자원화하여 재생·재활용하는 방안인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과잉인구에 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생산원자재를 수입해 쓰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의 폐기물의 자원화는 자원재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고용기회와 창업기회를 창출하는 결과까지 유발하게 되어 더욱 효과적인 시책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일반주민은 폐기물의 발생원에서부터 자원화 가능폐기물을 분리·보관·공급하고, 산업체에서는 이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여 재생기술을 향상시키고, 정부는 각종 인센티

브제도를 도입하여 폐자원 및 재생품의 시장성을 보호해 주는 등 정부, 산업체, 일반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해 나가야 한다.

#### (5) 국제협력기능의 강화

환경보전문제는 국내환경문제의 해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환경문제가 전세계문제로서 인류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져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려는 국제적인 공동대처능력이 크게 진전되어 가고 있다.

마침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12월 UN총회에서 UNEP의 관리이사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간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환경관리기술 및 환경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때가 되었으므로, UNEP사무국 등에 주재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협력강화에도 힘을 기울여 환경행정의 선진화에 進一步하여야 할 것이다.

#### (6) 환경관리기구의 개편·승격

지금까지 논의한 과제들 외에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는 많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조직체계와 기구를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관련업무는 그 업무의 특수성과 오염관리의 복잡성 등으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내 여러 部·處·廳에 그 기능이 분산, 다원화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상하수도와 국토이용관리업무는 건설부가, 공업배치와 공단관리업무는 상공부가, 에너지관리는 동자부가 그리고 자연보호와 해양오염방지는 내무부가 수행하고 있는 등 총 14개 部·處·廳 37개 局에서 환경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법령상 필히 협의를 필요로 하는 기관만도 9개부·處·廳 21개 局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업무들이 전체적인 조정이나 연계가 없이 추진되고 있거나 부처간 협의·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부처간의 고유업무의 相異에 따라 환경분야업무의 우선순위가 서로 달라 비효율적인 마찰과 사업간의 중복, 死角現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같이 정부내 部·處·廳에 분산 다원화되

어 있는 비효율적인 환경 관리업무를 종합·조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현 환경청의 청단위조직기구로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 환경청을 「部」수준의 기구로 승격·개편하여 주요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항시 동참시켜 명실상부한 환경업무 전담의 중앙행정 기관으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N. 맷 음 말

앞에서 우리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심각성, 반공해사조 및 대응노력의 추세, 우리나라의 현행환경관리시책, 앞으로의 시책 방향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앞으로도 계속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의 추세가 현재의 방식과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현재 우리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이들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2·반공해사조와 대응노력」에서 이미 살펴 보았듯이 1960년대 초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산업화에 부정적이었던 반공해사조는 그간 4 반세기를 거치면서 긍정적 대응노력쪽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지난 4 반세기 동안의 반공해사조와 대응노력의 추세를 매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다시 한번 그 특징을 살펴보면 ① 1960년대는 래칠 카슨 여사의 「침묵의 봄」으로부터 시작된 환경오염이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새로운 인식이 산업혁명 이후 3세기동안 지속되어온 「산업화」라는 至高至善의 가치에 제동을 걸어 산업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공해사조에 점화를 시킨 시기였고 ② 1970년대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슈마하의 「작은것이 아름답다」로 대표되는 반공해(anti-pollution), 반산업화(anti-industrialization)의 사조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원고갈을 내세워 지구촌의 위기를 경고하여 성장이냐 보전이냐의 양자택일론(either or philosophy)으로 팽팽히 맞섰던 시기였으며, ③ 1980년대는 UNEP가 주관 또는 후원해온 전세계적 또는 지역적인 각종 환경회의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베르사이유의 「세계산업환경회의」를 계기로 “환경의 질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성장”이란 모토(motto) 아

래 양자간의 균형조화라는 절충론을 취하여 산업계에서 생산기술의 개발에 못지 않게 공해예방기술, 즉 청정기술의 개발에도 역점을 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1970년대의 舊 3 P原則, 즉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이 新 3 P原則, 즉 예방우선원칙(prevention pays principle)으로 대체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低 또는 무공해기술이 전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자원의 恒產範圍內에서 산업화가 지속될 수만 있다면 성장과 보전은 대립·적대관계가 아니라 양립공존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알빈 토플러(Alvin Toffler)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자연과의 공존조화(symbiosis/harmony with the earth)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보존정책의 기본방향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여 ‘성장과 보전의 균형조화’를 그 기조로 삼고 있다. 다만 이같은 기조를 실제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정책방향외에 보다 근본적인 다음 몇 가지의 철학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는 GNP 맹신사조에 기초를 두고 있는 양적 경제성장 보다는 전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개발부문에 더 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어떤 학자는 경제개발을 사회개발의 한 수단으로, 또는 일부분으로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근대화작업을 착수한 이후 4 반세기 만에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해방, 무지와 역질로부터의 해방, 폐쇄로부터의 해방으로 선진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더이상 사회개발 없는 아니 사회개발이 경제개발에 뒤지는 양적 성장정책에만 치중한다면 가진 자와 안가진 자, 많이 베는 자와 적게 베는 자간의 격차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사람의 값어치는 더욱 떨어져 인간성의 상실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말 것이다.

둘째, 외국의 다국적공해산업의 국내 입지를 가능한 한 억제하자는 제언이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환경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1%의 국민총생산을 산출해 내는데

0.6%의 환경오염이 수반된다고 한다. 이와같은 시각에서 보면 제품을 생산하여 국외로 수출한다는 것은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물량의 생산에 수반된 만큼의 공해를 감수하면서 그 대가로 외화를 가득하게 되고, 반면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수입물량 해당분의 제품에 대해서는 하등의 공해없이도 외국의 완제품으로 자국국민의 수요를 충족시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잉여인구에 국토는 좁고 자원마저 稚無한 경우에는 부득이 내수 시장보다는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장사꾼이 될 수밖에 별 도리가 없어 다소의 공해를 감수하더라도 외화를 벌어들여야 하지만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입지하여 수출을 일삼을 경우에는 벌어들인 외화는 그들 외국기업의 것이 되면서 공해만이 국내에 남게 된다. 물론 이같은 논리에 대해 국내의 고용효과, 내수충족, 기술전파 등의 이점이 있다는 반론이 없지 않으나 선진외국의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 대부분이 고도기술, 수출지향적 산업으로서 고용효과가 어느정도나 될지 의심스러우며, 생산제품의 내수충당의 경우에도 그것이 소비재일 경우에는 불필요한 소

비조장 등 그 駭害가 크다 할 것이다. 기술의 전파보급문제도 기업간의 경쟁, 나라간의 경쟁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그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무역자유화, 개방압력 등 통상외교 분야에서 어려운 점은 없지 않으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고용효과, 외화가득, 환경오염 등 제반 측면에서 득과 실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결정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세째, 보다 과감하고 효과적인 도시화 억제시책을 펴 나가자는 제언이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의 증가는 산업화, 도시화, 환경오염, 자원고갈의 動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도시화는 그 핵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증가 억제시책은 일찍부터 착수되어 그간의 성과가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으나 도시화억제시책으로는 도시영세민의 농어촌 이주지원 정도가 고작이며 오히려 도시개발, 택지조성, 도시근방공단의 조성 및 고층아파트의 건축 등 離農向都를 불러 조장하는 시책만 계속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보다 과감하고 효과적인 수도권인구의 지방 분산책 등 대도시화의 억제시책이 요망된다.

〈연재②完〉—

## 환경만평 7

### 민의(民意) 부응

